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5월 03일 22시 52분



##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

2009.03.23 조회수 80 등록자 정창권

**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 안내** ○ 자동차 공회전 제한제도란?- 특정장소 터미널, 차고지,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연료낭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로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○ 자동차 공회전 제한 - 근 거 :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- 제한차량 : 모든 자동차(이륜자동차, 긴급자동차, 냉동냉장차량 등 제외) - 제한장소 : 종합버스터미널과 죽동시영주차장 등 30개 노상노외주차장 - 제한시간 : 5분이상(대기온도 5도씨이하인 경우 10분 이내 허용) - 제한방법 :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속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(5만원) 부과 ○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- 휘발유 가스차량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. - 경유차량 자동차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필요 없으며, 겨울철에도 5분 이내에 출발하셔도 됩니다. - 재시동 시에도 바로 출발하시고, 2분이상 주정차시는 시동을 끕니다.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의(목포시 환경과 061-270-8543)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공회전제한제도 자발적으로 참여합시다!!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[홍보\(2009.1\).hwp \(1818 hit/ 32.5 KB\) ↓](#)
[미리보기](#)
**목록**

&lt; 이전글

신흥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

다음글 &gt;

주민등록최고공고문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